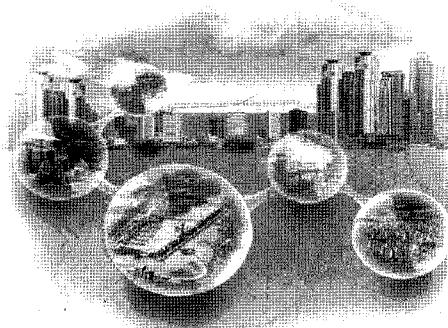


## 제품리콜제도 활성화



「제품안전기본법」이 금년 2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7월 28일 개최하였다.

그간 제품안전관리는 제품의 제조·출하 단계의 안전관리에 치중하였으며, 제품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 처리 및 수거·파기 등을 위한 행정조치가 미흡하였으나, 「제품안전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는 위험성이 확인된 제품을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되어, 리콜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1999년도와 2007년도에 소비생활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자동차 및 식품 등을 제외한 생활제품에 대하여 '09년 한해에만 미국이 465건, 일본이 156건의 리콜을 실시하였다.

위험성이 경미한 사항은 제품수거 등을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품 수거 등을 명령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제품수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

을 때에는 정부가 직접 해당제품을 수거 또는 파기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요비용을 징수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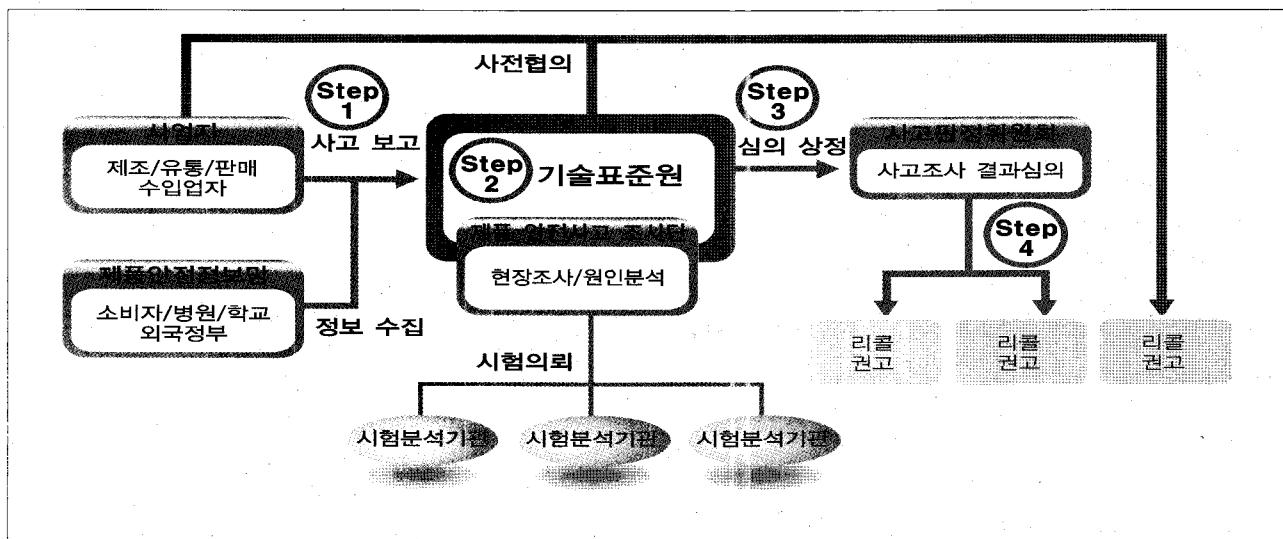
제품의 중대한 결함을 인지한 경우 사업자의 보고 및 자발적 조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사업자가 자진 리콜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강제적 리콜 명령이나 벌칙 등을 면제도록 하여 시장기능을 통한 안전관리제도의 정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수거 등의 권고나 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권고·명령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제품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품안전사고 조사단」을 운영하고, 현재의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새롭게 출범시켜 명실공히 제품안전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한 홍보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 사항에 대한 R&D 지원 등의 종합

## 【 리콜 및 사고조사 절차 】



적인 대책도 펴나갈 방침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각계의 의견을 검토·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할 예정이다. 외국의 리콜 제도를 보면, 미국, EU, 일본 등은 자국 시장의 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리콜 및 제품사고조사 제도를 운영한다.

美, 日은 각각 '99년과 '07년에 소비생활용 제품에 대한 리콜제도를 도입, 작년 한해 미국이 465건, 일본이 156건의 리콜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09년에 자동차가 75건, 식·의약품이 354건의 리콜이 시행되었으나, 소비생활용제품은 시·도지사의 행정명령 29건이 전부이다.

## 【 주요 국가의 리콜제도 】

구분	미국	일본	영국
관련법	소비자제품안전법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건강안전노동에 관한 법
기관명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건강안전위원회(HSE)
기관성격	독립연방기구	경제산업성 소속 독립행정법인	노동복지부 소속 비정부 공공기관
정보제공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결합 제품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의무</li> <li>사망, 중상으로 인한 민사소송 보고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대 제품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보고의무</li> <li>제품위해정보망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자에 정보제공 의무</li> <li>EC 회원국간 제품안전 네트워크 구축, 운영</li> </ul>
제품리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유통 중단</li> <li>결함사항 공표</li> <li>리콜권고, 명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선명령 및 표시금지</li> <li>위해방지명령(리콜)</li> <li>체제정비명령</li> <li>사고제품 공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제품 안전성조사</li> <li>위해제품 리콜, 공표</li> </ul>
제도시행	1999년	2007년	1994년